

의안번호	2210451
의 퇴 인	정동영의원
회 답 일	2025. 7. 10.
추 계 번호	25B2850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6,800만원(연평균 2억 5,36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 (안 제7조)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 (안 제9조·제10조)	3.6	3.6	3.6	3.6	3.6	18	3.6
계	253.6	253.6	253.6	253.6	253.6	1,268	253.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등 3.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인재육성 센터의 설치 등)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이하 “인재육성센터”라 한다)를 둔(제1항) 인재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제14조에 따른 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 육성 활동의 지원 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3. 국내외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9	안 제14조(인재개발 기관등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육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 인공지능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이하 “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개발기관등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17조(인공지능 교육기관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의 인공지능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의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장학금·실습비·연구조성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1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의무규정
15	안 제24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5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등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해 수립하는 연도별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지원 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7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고
5	안 제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기본계획 및 제정안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6	안 제9조(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 유사사례 참고
7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안 제11조(인재육성센터의 설치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센터의 인력 규모, 업무 수행 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14조(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 인공지능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이하 “인재개발기관등”)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재개발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7조(인공지능 교육기관 등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 항목 및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td><td>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td><td>30,000</td></tr><tr><td>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2232-302)</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td><td>13,500</td></tr><tr><td>지역디지털 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td><td>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td><td>31,382</td></tr><tr><td>생성AI선도 인재양성 (2232-314)</td><td>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td><td>8,700</td></tr><tr><td>AI스타 펠로우십 지원 (2232-316)</td><td>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td><td>9,000</td></tr><tr><td>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td><td>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td><td>10,059</td></tr><tr><td>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td><td>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td><td>6,78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2232-302)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2232-314)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2232-316)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	9,000	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3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2232-302)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13,50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31,382																						
			생성AI선도 인재양성 (2232-314)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8,700																						
			AI스타 펠로우십 지원 (2232-316)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	9,000																						
			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10,059																						
			디지털 전문·융합인재양성 (2232-325)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6,78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8조(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과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2	안 제19조(해외교류·연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해외교류·연수사업의 대상자 선정·지원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해외교류·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td><td>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AI 등) 해외 최고 수준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우수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파견교육 과정 개설 운영</td><td>6,107</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AI 등) 해외 최고 수준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우수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파견교육 과정 개설 운영	6,107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교육훈련)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AI 등) 해외 최고 수준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우수 대학원생 대상 글로벌 파견교육 과정 개설 운영	6,107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20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td><td>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td><td>5,0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5,00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5,000							
14	안 제21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5	안 제24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촉진을 위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6	안 제2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는 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연도별로 수립되는 점과 유사사례(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¹⁾에 따라 매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실시 예산은 2억 5,000만원임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5,000만원(연평균 2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유사사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 회의는 연 3회³⁾ 개최됨

[표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¹⁾	민간 위원
위원 수	11명	3명	6명
구성 인원	• 위원장: 1명(교육부장관) • 당연직위원: 10명(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의 차관)	• 시·도지사 2명 • 교육감 1명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등 6명

주: 1) 2014년 최초 구성 당시 기준으로, 2025년 현재 시·도지사 1명, 교육감 1명이 위촉됨(위촉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임기별로 변동됨)

자료: 교육부

- 2)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1년간 개최 횟수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함(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참고)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0만원⁴⁾으로 하며, 회의 개최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함

[표 4]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구 분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등	민간 위원
위원 수	11명	3명	6명
구성 인원	• 위원장: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당연직위원: 10명(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명)	• 시·도지사등 3명	•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등 6명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 구성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00만원(연평균 360만원)으로 추계됨

– 민간위원 6명 × 참석수당 20만원 × 회의 개최횟수 3회 = 연 360만원

[표 5]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지원위원회	3.6	3.6	3.6	3.6	3.6	18	3.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